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위원회)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유영청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항 나목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 지방세납세증명 1건 : 수수료액 500원 → 800원 <변경>
-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항 사목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 1개년1필지 수수료액 500원→ 800원 <변경>
 -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 1개년 1호 수수료액 500원→ 800원 <변경>
 -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 1개년 1호 수수료액 500원→ 800원 <변경>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 1필지 수수료액 1,000원 <신설>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

4. 검토의견

-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 6. 29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월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음.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나.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

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별첨

#별첨 1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